



제305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7. 18.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10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기금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관리·운용 의무 명시(안 제6조)
- 나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·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(안 제5조, 제7조)
  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
    - 지방세 세입 : 100분의 30 → 100분의 20
    - 순세계잉여금 : 100분의 200 초과 → 100분의 10 증가  
초과분의 100분의 20 → 증가분의 100분의 50
  -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상향 : 100분의 50 → 100분의 80
  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
- 다.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한 기금 관리 강화(안 제7조의~제7조의5)
- 라. 상위법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 의무사항을 재량사항으로 변경(안 제8조)
- 마.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예산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5. 30. ~ 6. 19. (20일간) / 의견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(제2023-793호, 2023.10.23.)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를 명문화하고,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며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여 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.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사안으로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.

**☑ 「지방재정법」**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**☑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**

제11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·진로설정, 해외연수, 어학·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창의적·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방안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자치법규안명
  -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재정 수반 요인
  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’에 해당.
-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부 내용과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대체하고자 함

### 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예산과 안병찬